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6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국가정책사업\*의 안정적 이행,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복합시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등
- 타 시·도교육청 직급별 정원채정기준과의 형평성 및 균형\*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 6급 이하 정원채정기준 상향 조정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 국정과제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 단위 기구 설치에 따라 부서장 직급 배정을 위한 단위기관 내 직급 조정
- 증가하는 행정 수요(산업안전·보건·환경·급식 등)에 효율적 부응 및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보건안전진흥원 (가칭)총무부를 신설함에 따라 단위 기관 내 직급 조정

##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급 정원 증원: 증 2명 (42명 → 44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증원: 증 2명 (31명 → 33명)
  - 5급 이하 정원 감원: 감 2명 (7,042명 → 7,040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2) 입법예고(2024. 3. 25. ~ 2024. 3. 27.)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3] 제외통보 확인서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4]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4급 이상</th> <th rowspan="2">5급</th> <th rowspan="2">6급</th> <th rowspan="2">7급</th> <th rowspan="2">8급·9급</th> <th rowspan="2">전문경력관</th> <th colspan="2">연구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2% 이내</td> <td>8% 이내</td> <td>3% 이내</td> <td>3% 이내</td> <td>23% 이상</td> <td>0.2% 이내</td> <td>0.0% 이내</td> <td>0.2%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3% 이내	23% 이상	0.2% 이내	0.0% 이내	0.2%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4급 이상</th> <th rowspan="2">5급</th> <th rowspan="2">6급</th> <th rowspan="2">7급</th> <th rowspan="2">8급·9급</th> <th rowspan="2">전문경력관</th> <th colspan="2">연구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2% 이내</td> <td>8% 이내</td> <td>3% 이내</td> <td>4% 이내</td> <td>16% 이상</td> <td>0.2% 이내</td> <td>0.0% 이내</td> <td>0.2%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4% 이내	16% 이상	0.2% 이내	0.0% 이내	0.2% 이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3% 이내	23% 이상	0.2% 이내	0.0% 이내	0.2% 이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4% 이내	16% 이상	0.2% 이내	0.0% 이내	0.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연구직공무원: 삭제	3. (현행과 같음)																																								
4. 별정직공무원	4.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4급상당</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5% 이내</td> <td>55% 이내</td> <td>30%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5.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장학관·교육연구관</th> <th>장학사·교육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0% 이내</td> <td>70%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지원청</th> <th>공립의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7,722</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총 계	7,72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지원청</th> <th>공립의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7,722</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총 계	7,722																				
구 분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총 계	7,722																																								
구 분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총 계	7,72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2		31	11		4급	44		33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2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동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일반직 정원의 총계 변동 없이 4, 5급의 소속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4급 정원의 증가로 일부 관련 인건비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 결과 현재 총액인건비 범위내의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024년 지방공무원 연봉제(4급·5급) 1인당 연간 인건비 비교

(단위: 원)

구 분	인건비	비고
연봉제(4급)	130,582,734	본봉 및 법정부담금
연봉제(5급)	109,780,606	
차 액	20,802,128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전은산(02-2282-864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4. 3. 27.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li> <li>- 동 개정(안)은 국가시책사업 이행,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유보통합 추진 위한 과 단위 기구 설치 및 보건안전진흥원 <sup>(가칭)</sup>총무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별표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li> <li>-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 반영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원안동의”

【별첨 3】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0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전은산	전화번호	02-2282-864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03월 2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03월 22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3월 22일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전은산 (02-2282-864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열(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조 제4조	<p>-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조정 및 타 시도교육청 직급별 정원채정기준과의 형평성 및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채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위기관 내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됨.</p> <p>- 본 개정안은 4급 정원을 2명 증원하면서 5급 이하의 정원을 2명 감원함. 본 개정안은 본청과 소속기관 중심으로 개편되어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위직급 공무원의 정원은 학생의 건강, 안전, 복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이 각급 학교의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p> <p>- 그 외에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p>					원안 동의

【별첨 5】

## 관 련 규 정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2. 27., 2020. 4. 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